

[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제1조 【 목 적 】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말일 선 납부하기로 한다.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.
- ④ ‘갑’또는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- ⑤ ‘갑’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 산정하되, 1회당 10일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원하는 경우 외박수가의 100%를 본인이 부담한다.
- ⑥ ‘갑’이 외부에서 식사 또는 외부 음식을 원내에서 섭취하여도 이용료에서 식사비, 간식비를 제외 하지 않는다.
- ⑦ ‘갑’이 입소, 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%,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%만 산정한다.

◇노인요양시설급여(단위: 원)

(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/ 30일 기준)

적용	등급	1일	월	본인부담금			비급여 항목	합계금액(월)		
				일반 (20%)	경감		식재료비	일반 (20%)	경감	
					12%	8%			12%	8%
☐	1	90,450	2,713,500	542,700	325,620	217,080	*일반식 식사:3,500 간식:1,500 (360,000/월)	902,700	685,620	577,080
☐	2	83,910	2,517,300	503,460	302,070	201,380		863,460	662,070	561,380
☐	3	79,240	2,377,200	475,440	285,260	190,170	*경관식 식사:4,000 (360,000/월)	835,440	645,260	550,170
☐	4									
☐	5									
☐	등외		79,240원/1일					2,377,200원		
☐	기초수급권자		전액 지원					0원		
☐	상급침실 이용료		1인실: 3,000원/1일							

-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감경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한다.
- 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.
- ※ 비급여 항목 중 식사 및 간식 관련비용은 전문 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하여 별도 비용입니다.
-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(식사, 간식비는 생계비로 대체됩니다.)

◇계약의사 진료 본인부담 비용(단위: 원)

(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)

진료구분	2024년도 본인부담금(기준)			
	일반(20%)	감경(12%)	감경(8%)	기초생활수급자(0%)
초진비용(18,410원)	3,680	2,200	1,470	0
재진비용(13,160원)	2,630	1,570	1,050	0
의사소견서 발급비용	20%	10%		0

- ※ 계약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(어르신)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함.
- ※ 계약의사가 ‘갑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건강상태가 악화될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사 진료에 동의여부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.
(단,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사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음.)

☐ 계약의사 진료 동의함
 ☐ 계약의사 진료 동의하지 않음
☐ 약 처방 조제 및 위탁 동의함
 ☐ 약 처방 조제 위탁 동의하지 않음

이에 따른 계약의사 진료 후 본인부담금(초진·재진 비용)이 발생될 경우 추가 부담에 대해 보호자 _____는(은) 납부하겠습니다.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☐ 20%	15%
기초수급권자	☐ 0%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☐ 12%	9%
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☐ 8%	6%

※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아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- ①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- ② 상급침실 이용료
 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해야함
 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- ③아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아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◇세부내역(30일 기준)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③총 계(①+②=③)			
요양보험 부담비용	①소 계		
	요양급여비용(80%)		
개인 부담비용	②소 계		
	요양급여비용(20%)		
	식사재료비/간식비		
	상급침실 이용료		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및 권리 】 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‘갑’의 의무

- 1.월 이용료 납부
- 2.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- 3.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
- 4.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- 5.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‘을’의 의무

- 1.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- 2.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- 3.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- 4.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5.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‘병’의 의무

- 1.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2.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- 3.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- 4.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‘을’에게 통보
- 5.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‘갑’의 해지

- 1.‘갑’과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‘을’의 해지

- 1.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2.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3.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을’은 갑’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‘갑’또는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 【 퇴소 】

- ①‘을’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‘갑’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‘갑’과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‘을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‘병’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‘갑’또는‘병’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(또는 ‘병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제7조 【 입소물품 】

‘갑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- ①‘갑’의 면회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10:00시부터 16:00까지로 하고,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(단 ‘갑’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이 면회시간을 협의 할 수 있다).
- ②‘갑’은 외출·외박 시 사전에 ‘을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이나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 할 수 있으나, 반입된 음식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책임진다.
- ④외출·외박 중 ‘갑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 【 시설관리 】

- ①‘을’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‘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 【 건강관리 】

- ①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 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
- ④‘을’은 입소 시 ‘갑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‘갑’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, ‘갑’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‘을’은 ‘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 확인 시 지체 없이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- ⑦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1조 【 시설물 배상 】

- ①‘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‘갑’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복구 해야 한다.
- ②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 ‘을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【 위급 시 조치 】

- ①‘을’은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해야한다.
- ②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통보해야한다. 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- 1.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2.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무연고자

- 1.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을’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- 2.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 진행 후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3.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- ①식사와 간식을 전량 위탁한 공급업체가 1일 3식 및 간식을 ‘갑’에게 제공한다.

-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식재료비는 ‘을’이 시·군·구로부터 수납하여 전량 위탁한 전문 업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‘을’은 전량 위탁한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‘갑’에게 제공하고 게시한다.

제15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 ‘갑’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의 건강상태, 관리(수발·도움)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‘을’이 변경할 수 있으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을’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- ①‘을’은 ‘갑’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한다.
- ②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의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‘갑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구두 또는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으로 한다.
- ④‘갑’은 ‘을’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‘을’은 가능한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 배상책임 】

-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- 1.시설 종사자의 고의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2.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3.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4.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‘갑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과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- 1.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- 2.‘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이 임의로 활동하여 발생한 손해와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3.‘갑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4.‘갑’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5.입소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손해 일 경우는 입소자 당사자 간에 배상책임으로 한다.

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-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